ISSUE BRIEF

이슈브리프 864호
(2026. 7.16)

일본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의 함의와 시사점

제864호

주동진 joo2868@inss.re.kr
강경호 bicriv@inss.re.kr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국문초록

'일본판 CIA 출범'이라는 이슈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중일갈등 장기화 △'강한 일본' △우경화 등의 배경 속에서 통과되며 여러 의문·의혹을 증폭·유발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해당 법안이 정보라는 민감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기에 실상과 무관하게 그 관점과 입장에 따라 여러 긍정적·부정적 의미가 투영될 수밖에 없는 점이다. 더불어 이와 유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법안들도 다수 대기 중에 있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를 필두로 한 내각·자민당이 야당과 여론의 지속적인 우려와 비판 속에서도 △개인정보법 개정안 △통신감청법 개정안 △스파이방지법 △외국 대리인 등록법 △대외정보청 △간첩죄 △개헌에 따른 '긴급대응조치' 등의 검토·제정을 추동하고 있다. 즉, 곧 정식으로 출범할 국가정보회의·국가정보국은 장차 유관 법안들과 연계되며 대내외에 여러 부차적인 파급력을 초래·투사할 가능성이 크다. 인접국인 우리나라에도 여러 유형의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불가결하다. 본 이슈브리프는 선제적·전략적 차원에서 일본의 정보활동 강화 행보를 분석하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한일 양자관계의 측면에서 실용적 접근·대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한다.

키워드: 한일관계, 국가정보회의, 국가정보국, 정보활동

현재 일본은 △민주적 통제 △정보안보 강화 △정보의 통합강화 등을 이유로 ‘국가정보회의설치(国家情報会議設置)’ 법안을 통과시켰다.[1] 지금까지 정보활동 강화 시도는 그 자체를 민감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매번 여론과 야당의 우려·반대로 인해 공회전하거나 무산되는 경향이 다대했다. 일본 집권 세력이 정치적 추동력을 확보·지속함으로써 향후 여러 난관에도 불구 해당 법안을 점진적으로 체계화·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아가 일본의 정보활동 강화 행보가 장차 미국 중심의 정보 협의체인 파이브아이즈(FIVE-EYES)와의 공조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회의·국가정보국 관련 주요 내용

일본 집권 세력이 급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정당정치·중일갈등 관련 내우외환을 계속 직면·감내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은 이러한 역내 정세 속 국가안보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정보 영역에서 파편화된 정보를 통합하거나 종합 분석하는 등 정보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제기되었다. 중요한 점은 일본의 이러한 행보가 ‘강한 일본’과 같은 전후(戰後) 질적 전환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는 점이다. 즉, 해당 법안은 일본의 △‘보통국가’화(化) △‘전쟁가능국가’로의 전환 △우경화 행보 등과도 연계되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여기서 상기(上記)의 측면을 염두에 두며 해당 법안을 정보활동의 △정의·범주 △임무·기능 △조직구성 체계·운영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1) 일본 중의원 홈페이지, ‘국가정보회의설치법안(國家情報會議設置法案)’. (검색: 2026년 6월 30일).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22109024.htm;내각관방 홈페이지, ‘국가정보회의설치법안(國家情報會議設置法案) 개요’. (검색: 2026년 6월 30일). https://www.cas.go.jp/jp/houan/260313/gaiyou.pdf

첫째, 정보활동의 정의·범주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재정립했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중요정보활동(重要情報活動) △외국정보활동에 대한 대처(外国情報活動への対処) 등 2가지를 핵심 개념으로 설정·채택하며 법안의 그 의미·방향성을 비교적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정보활동'은 △안전보장의 확보 △테러리즘 차단 △긴급사태 대응 △중요한 국정운영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와 연관된 활동 등을 지칭한다. 그리고 '외국정보활동에 대한 대처'는 '외국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활동'으로 규정된다. 특히 법안의 법적 범주가 포괄적 광의(廣義)의 용어로 인해 '필요에 따라 임의로 확대될 수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활동의 임무·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국가안전보장국과 동격으로 위치시켰다. 해당 법안은 제3조에서 관련 기관의 △역할 △권한 △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역할로는 관계된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통합·조정하고 상호 협력과 공조를 조율하는 총괄 기구 역할이 부여되었다. 권한으로는 △상기(上記) 역할 관련 권한에 더해 △총리 직속 내각정보조사실에서 관리해왔던 정보위성 자산 개발·운용 관련 통제 권한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방침으로는 '중요정보활동'과 '외국정보활동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의 종합적 분석·평가를 통한 기본방침 설정이 주요 기능으로 제시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정보 영역에 있어서 만큼은 방위성·외무성 등의 행정조직들조차 모두 수렴할 수 있는 최종 관리자'의 지위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보를 매개로 한 최상위의 파급력 확보·투사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셋째, 정보활동의 조직구성 관련 체계·운영을 총리 중심의 독립적 권력기관의 형태로 구축하고 있다. 일단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은 총리를 의장으로 두고 그 의원으로서 관방장관·외무대신·방위대신·법무대신·재무대신·국토교통대신·경제산업대신·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등 내각 직속의 핵심 장관들을 총망라한다. 특히 해당 법안은 전체 14조 중 제4~10조에 걸쳐 그 조직구성을 아직 포괄적 형태에 불과한 다른 조항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실제로, 법안은 △내각 중심의 폐쇄적·독립적 구조 △총리가 의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총리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 구조 등을 이제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실현 과정에서 여타 세력·의도에 의해 변동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권 세력 측의 선제적 조치에 해당한다. 즉, 정치권 내 견제 기능이 불발한다면 장차 총리의 권력 독점·독주 등과 같은 부작용과 그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정보활동 역량 강화가 유발할 향후 대내외적 파장 전망

일본 정부의 최근 행보는 중일갈등 장기화와 각자도생 기조의 확산 등을 반영할 때 기능적·효율적 측면에서 일견 불가결해 보이기도 한다. 현재 일본의 정보활동 역량 강화 시도는 △외무성·경찰청·방위성 등에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기관 간 총괄·통합 △정보수집 기능 일원화 △자국의 독자적·다층적 정보수집 역량 제고 △대(對)미국 정보의존도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타국의 적대적 정보활동 차단을 위한 △스파이방지법 △대외정보청 등을 염두에 둔 법적·제도적 발판 마련 행보가 국가정보회의·국가정보국 관련 행보 중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순기능만큼 역기능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이다. 현재 총리·내각·자민당이 정국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제동장치의 부재는 제도적·정략적 불협화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안 속의 기준이나 범위가 모호한 광의적·포괄적 용어 사용은 정략적 측면에서 해석에 따른 정쟁과 제도적 모호성을 유발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편향적·자의적 해석에 따른 광범위한 감시나 정보수집으로 이어지며 인권침해 관련 위험성을 적법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그 설치기구의 특성상, 기밀성과 폐쇄성으로 인한 권력남용이나 불법 정보활동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법안에 대한 야당과 여론의 우려·불만이 최근의 총리 지지율 변동성에까지 맞물릴 경우, 일본 정국도 여야 간 정치적 불안정·균열 국면에 반복적으로 함몰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불어 문제가 대내적 측면뿐 아니라 대외적 측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활동에는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정보수집 활동 전개로 양국 간 긴장 관계를 조성하고 외교적 마찰을 발생·심화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이 한일 관계에서 작동할 경우, 양국이 근래 셔틀외교를 통해 다져온 양자 관계의 호혜성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측면은 현실적 한계의 측면에서 차후 단계적·순차적으로 채워져 나갈 실질적 세부 조치를 통해야만 그 전체상을 분간·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일본의 관련 행보에 대한 주변국 입장을 참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미래의 대응 조치 마련에 필요한 실마리를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관련 기조·원칙을 정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정보회의·국가정보국을 둘러싼 각국의 상반된 반응

미국·영국·호주 등의 서방 진영은 일본의 정보활동 역량 강화 행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서방 진영은 일본의 통합정보기구 출범과 관련해 △강화된 보안시스템에 따른 정보공유와 소통 채널 확대 △대(對)중국 핵심 정보파트너 확충 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 일본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사이버 인지전 중요성 확대 △첨단기술 유출·보호 등에 있어 핵심 정보파트너로서 관련 역할을 유의미하게 분담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 관련 공급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도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중국·러시아 등의 비서방 진영은 일본의 정보활동 역량 강화 행보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다. 비서방 진영은 일본의 시도를 △신군국주의 △재무장·우경화의 가속 △전쟁가능국가 전환 시도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중국은 '전범국 일본의 시대착오적 행보' 등으로 강하게 폄하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일본의 행보가 △대(對)주변국 정보수집·침투공작 등의 공세적 정보활동 확대 △미국 정보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채널 구축 △파이브아이즈(FIVE-EYES) 합류 시도 △대(對)중국·러시아 압박 수단 확충 등으로 연쇄·확산할 가능성 또한 경계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행보를 '헌법 9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하며 자국의 군사력을 확장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로도 간주하고 있다.

현재 국제법의 측면에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의거 그 법적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은 부재하다. 즉, 일본의 행보는 총리 등

집권 세력이 속행하는 이상 현실화·상시화의 단계를 거쳐 여러 결과를 파생시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2028년 참의원 선거까지 이어질 일본 정국 내 여야 간 줄다리기를 상정하며 한일 관계의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타진할 필요가 있다.

대(對)한국 함의와 시사점: 기회요인과 도전요인

일본의 정보기능 강화 추동 행보는 우리나라에 있어 기회·도전이 병존하는 고등 방정식에 해당한다. 우선 관련 행보는 북핵·미사일 도발이나 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 동향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정보교환 속도와 정확도를 한층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정보교류를 통한 공조 강화를 추동하는 데에도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관련 행보는 과거사 문제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양국 간 첨예한 현안과 관련해 고도화된 공작이나 전술을 동원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도전요인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특히 관련 행보는 경제안보·기술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팽배하는 가운데 양국 간 경쟁산업에 있어 우리나라의 기술개발·공급망·투자전략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활동의 강화로도 발전할 수 있다.

도전요인은 자국 우선주의의 측면에서 향후 일본의 대(對)한국 견제 행보의 전방위적 강화로 발전하며 순항 중인 한일관계에 심대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 모두 '기회요인 증가에 비례한 도전요인 증가'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양자관계 속 실용외교에 따른 여러 유의미한 성과를 견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현안에 대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긴요하다. 차후 긴밀하고 유효한 전략적 소통을 위해 다음 4가지를 강조·제언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일본 통합 정보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단일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보교류에 따른 중요정보 유출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양국 간 정보교류 분야를 북핵·미사일 도발이나 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 동향에 집중시킴으로써 교류 과정의 통일성·효율성을 동시 추동해야 한다. 셋째, 양국 간 정보교류와 관련해 과거사·반도체·원자력·관세·방산 등의 최근 현안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전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발굴하고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익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 정보가 정보교류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방첩 관련 인식 제고를 견인해야 한다. 일본의 정보 관련 법안들이 이제 막 시동해 아직 골조 단계에 불과하지만 갈수록 가속할 가능성이 다대하다. 우리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대(對)일본 정보활동 강화 동향 파악과 함께 이에 적합하고 유연한 '외교↔안보↔경제↔기술' 통합전략 마련을 기대한다.

//끝//